

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0월 17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환경보전과장 정홍준)

□ 제안이유

-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, 기존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.(안 제5조)
- 나.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.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 되어있나요?	○위원장은 부시장이며 각계전문가 15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○소위원회 구성 목적 및 인원은?	○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수도국장이 며 5명 내외로 구성하겠으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및 환경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의사항으로 위 임 받은 안건을 처리 할 계획임.
○환경보전기금 적립금은 얼마며, 이 자 수입금은?	○현재 기금 적립금은 652,000천원 이며 이자수입은 13,000천원임.
○기금이자수입 활용 계획은?	○이자수입의 50%를 환경단체 보조금 및 환경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68호
의결 년월일	2007. 10. 26 (제139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0. 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, 기존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.(안 제5조)
- 나.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.

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4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”를 “기금운용계획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00분의 50이상”을 “100분의 50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심의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,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11조)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과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과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제2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13조)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상환기간전”을 “상환기간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목적외”를 “목적 외에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조례에 의한”을 “조례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14조)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15조)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6조)제1항 중 “출납폐쇄후 80일이내”를 “출납폐쇄 후 80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하고,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8조)제1항 중 “관리에 관하여는”을 “관리는”으로 하고, “예에 의한다”를 “예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”을 “제1항 이외의 사항은”으로 한다.
제13조(종전의 제19조)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</p> <p>③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하다.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.</p> <p>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, 총무·지역경제·환경 및 교통관련국장과 상하수도관리 기관의 장으로 하며,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⑤위원회에 감사 1인과 서기 1인</p>	<p>-----제6조에 따라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100분의 50 이상-----.</p> <p>제5조(심의)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 3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
현행	개정안
<p>을 두되, 간사는 <u>환경보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환경보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</u></p>	
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 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 2. <u>기금용자 조건에 관한 사항</u> 3. <u>기금결산에 관한 사항</u> 4. <u>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</u> 	<p>〈삭 제〉</p>
<p>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 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<p>제8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<p>제9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 원이 사망,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 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〈삭 제〉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위원회의 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1조(용자대상) 용자대상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기타 시장이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제6조(용자대상) -----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그 밖에-----
<p>제12조(용자조건 및 방법) ①시장은 용자조건 및 방법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용자한도액은 적립금 범위내에서 지원한다. 2.~4. (생략) <p>②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저리 용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, 시장은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용자조건 및 방법) ① -----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범위 내-----. 2.~4. (현행과 같음) <p>② 제1항제2호에 따라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용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재개) 시장은 용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<u>다음 각호의 1</u>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상환기간전</u>에 용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용자 또는 보조금을 <u>목적외</u> 사용한 때 2. (생략) 3. 법령 또는 이 <u>조례에 의한</u>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. (생략) 	<p>제8조(용자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재개)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<u>상환기간 전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<u>목적 외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조례에 따른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
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생략) ② <u>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계획은 <u>다음 각호의 사항</u>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당해연도</u> 기금사용계획 3. 4. (생략) 	<p>제9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연도</u>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
<p>제15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호와</u>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(생략) ② (생략) 	<p>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<p>제16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</p>	<p>제11조(결산 및 보고) ①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출납폐쇄 후 80일 이내</u>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----- 관리는----- ----- -----예에 따른다.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필요한----- -----.</p>